

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4. 12. 23

도 시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11. 21 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4. 11. 24

다. 상 정 일 자 : 제38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
제4차 도시위원회('94. 12. 23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 윤 여 철)

가. 제안이유

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는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중장기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잉여재원 상당금액을 적립금을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

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관리할 경우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금확보를 위해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이석래 위원(질의)

우리 구 중장기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

○윤여철 지역교통과장(답변)

98년 건립목표로 매년 8억원을 적립하여 대지구입 20억, 건축비 21억원 등 총 41억을 투자하여 4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